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66

2017년 4월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김경자(강서) 의원(찬성자 11명)
나. 제출일자 : 2017년 4월 7일
다. 회부일자 : 2017년 4월 11일
라. 상정결과 :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년 4월 20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경자(강서)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서점 이용의 트렌드가 대형화·온라인 서점 중심화 됨에 따라,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서점 및 관련 단체, 조합 등에 대한 지원근거와 독서문화 진흥 시설의 설치 조항을 마련하여 서울시 서점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서점 관련 단체, 조합 등 지원 조항 신설(안 제6조제6호)

(2)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 진흥 시설의 설치·운영 조항 신설(안 제6조제7호)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2)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3)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가. 개정안 개요

○ 동 개정안은 시민들의 독서 트렌드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서점 및 관련 단체, 조합 등에 대해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독서문화 진흥과 지역서점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되었음.

나. 조례 개정 배경

○ 현행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지역서점이

매출 저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지역서점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역의 독서 문화 유지 등을 견인할 목적으로 2016년 7월 14일부터 시행 중에 있음.

동 조례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제4조), 지역서점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규정(제5조부터 제6조), 서울특별시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 규정(제7조부터 제10조)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지역서점 활성화를 수행해야 하는 서울도서관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서점 및 관련 조합, 단체 등의 사업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독서문화 진흥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위원회 김경자 의원(국민의당, 강서구 제2선거구)이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 동 개정안은 이 외에도 서울특별시 지역서점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보다 폭 넓은 전문가의 위원 위촉이 가능하도록 하는 논의도 포함되어 있음.

다. 개정안 내용

○ 안 제6조의 경우, 현행 조례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각호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있어 '지역서점 활성화'에 대한 명기를 한 것임.

〈표 1〉 안 제6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역서점 지원)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 지원) 시장은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지역서점 및 관련 조합, 단체 등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신 설>	7.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 진흥 시설의 설치 지원
6.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8. (현행 제6호와 같음)

○ 안 제6조제6호는 지역서점 및 관련 조합, 단체 등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제안되었는데,

동 조례가 제정될 당시 지역서점이 소상공인 분야 중 한 분야이므로 이 분야를 소관하고 있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지역서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이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바 있는 서울도서관이 동 조례의 담당 부서로 지정되어 이번 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서울시는 시장지시사항으로 중소서점·헌책방 진흥방안('13.10), 책방정책마스터플랜('14.10), 서점 및 책문화 활성화 종합계획('15.2) 및 동 조례의 제정('16.6)으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꾸준히 세워왔으나 서울시 지역서점 개수는 여전히 감소

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정책의 실효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없어 동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민간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논의로 사료됨.

〈표 2〉 지역서점 현황(순수)

단위 : 개수

지역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서울	474	327	380	332	327	302	298
전국	2,247	2,103	2,042	1,825	1,752	1,625	1,559

출처 : 2016한국서점편람(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하지만 대표도서관으로서의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서울도서관이 소상공인 영역인 “지역서점”까지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제7호의 경우,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독서문화 진흥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삽입하였는데, 독서문화 진흥 시설은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독서문화진흥 시설의 설치가 “지역주민의 독서를 생활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설치함은 모법의 취지와 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 3〉 「독서문화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지역의 독서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한편, 동 조례의 주관 부서인 서울도서관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 시설 운영의 일환으로 2015년 6월부터 송파구 오금로1 신천유수지 주변에 대규모 헌책방 열람·판매·이벤트 공간인 '헌책 보물섬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상반기 개관을 예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시설을 지역서점 관련 조합·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됨.

○ 안 제8조제3항제5호는 조문 중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를 삭제하였는데, 제8조제3항제3호는 서울특별시 지역서점위원회 위원으로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위촉하는 규정으로 이에 준하는 자격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위원 위촉이 실질적으로 어려워 조금 더 포괄적인 위원 위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표 5〉 안 제8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구성) ①~② (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2. (생 략) 3.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생 략) 5. 그 밖에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생략)	**제8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2. (현행과 같음) 3.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삭 제>**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현행과 같음)

라. 종합 검토 의견

○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지역서점 및 관련 조합과 단체의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독서문화진흥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침체되어 있는 서울시 서점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음.

○ 서울시는 2013년 이후, 시장지시사항으로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사업 확장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나, 이러한 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을 과연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해야 하는 서울도서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할 것임.

또한, 현재 서울도서관에서 추진 중인 ‘헌책 보물섬 조성사업’이 2018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는 바, 동 개정안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보다 폭 넓은 지원과 아울러 해당 시설의 완공 후 지역서점 관련 조합 혹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자(강서)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766

발의연월일 : 2017년 4월 7일
발 의 자 : 김경자(강서) 의원(1명)
찬 성 자 : 남창진· 박중화· 이명희
최호정· 진두생· 황준환
김제리· 김구현· 유찬종
김인제· 이성희 의원(11명)

1. 제안 이유

○ 최근 서점 이용의 트렌드가 대형화·온라인 서점 중심화 됨에 따라,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서점 및 관련 단체, 조합 등에 대한 지원근거와 독서문화 진흥 시설의 설치 조항을 마련하여 서울시 서점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서점 관련 단체, 조합 등 지원 조항 신설 (안 제6조제6호)

나.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 진흥 시설의 설치·운영 조항 신설 (안 제6조제7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경영 및 창업지원을”을 “창업 및 경영지원과 활성화를”로 한다.

제6조제6호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6. 지역서점, 관련 조합 및 단체 등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7.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 진흥 시설의 설치 지원

제6조제6호를 제8호로 한다.

제8조제3항제5호 중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역서점 지원)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5 (생략) <신설> <신설> **6.**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역서점 지원) ---------- - **창업 및 경영지원과 활성화를** ---------- 1~5. (현행과 같음) **6. 지역서점 및 관련 조합, 단체 등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7.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 진흥 시설의 설치 지원** **8. (현행 제6호 내용과 같음)**
제8조(구성) ①~② (생략) ③ (생략) 1~4.(생략) 5. 그 밖에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4.(현행과 같음) 5. ------〈삭제〉----------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